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31
----------	------

제출일자 : 2018. 12.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의 특별회계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조례 제정 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개정2014.5.28.)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 12. 31.이 되는 바, 현행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존속기한 : 2019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5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18. 10. 31. ~ 11. 6.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 ></u>	<u>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u>제8조(준용) (생략)</u>	<u>제9조(준용) (현행 제8조와 같음)</u>

□ 「지방재정법」 제9조

제9조(회계의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